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2.

발의자 : 도종환 · 전재수 · 유은혜

김현권 · 신동근 · 인재근

설훈 · 오영훈 · 윤소하

문미옥 · 이찬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 한편, 각 시·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, 초·중등교육·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/4 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·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1조제3항 및 제9항 신설).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 및 제3항의”를 “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의”를 “제5항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는 분기별로 징수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(마지막 분기는 분기 말일로 한다)까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

⑨ 시·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결과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1條(地方自治團體의 負擔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第11條(地方自治團體의 負擔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·도는 분기별로 징수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(마지막 분기는 분기 말일로 한다)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 <u>⑤-----</u> <u>--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<u>⑥-----제5항의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<u>⑦ · 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</u></p>
<p>③ (생 략)</p>	
<p>④市·道의 教育行政機關의 長은 <u>제2항 및 제3항의</u>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으로 충당되는 歲出豫算을 編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</p>	
<p>⑤市·道教育委員會가 <u>제4항의</u> 規定에 의하여 編成된 歲出豫算을 減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教育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</p>	
<p>⑥ · ⑦ (생 략)</p>	

<신 설>

과 같음)

⑨ 시·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결과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